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T/F 1차 회의

2019.10.8.(화)  
10:00

# 모 두 말 씀

2019. 10. 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최고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② 채권추심의 가혹성과 글로벌 정책대응

금번 T/F는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못갚는 것이 아니라 안갚는 것'이라 생각하여

추궁과 종용에 이어 겁박까지 하게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경황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고

채무의 상환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과도한 추심은 늘 경계대상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시대만 하더라도

채무를 갚지 못한 자를 노예로 삼아 육체적 노동까지 추심하는

채무노예 제도가 만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솔론(Solon)은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채무노예를 해방하는 등

대대적인 사회 개혁정책을 펼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과도한 추심에 대한 문제의식은  
종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3개 종교가 모두  
이자 수취를 금지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교리로 풀어내는 표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그 근저에는 공통적으로  
고리대(usury)가 채무자의 삶과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인식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개인채무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포드(Ford)로 대표되는 대량생산 체제를  
대부와 할부 등 소비자금융이 뒷받침하였으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재건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계신용의 증가는  
경기둔화시 연체 증가와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1970년 전후로 미국<sup>1)</sup>·영국<sup>2)</sup>에서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1968

2) Consumer Credit Act 1974

이후 영국 연방국가와 유럽대륙도 유사한 단계를 밟아 왔으며,

특히 독일은 2002년에 채권법제를 현대화하면서  
「소비자신용법」(1990년 제정)을 「민법」에 편입하여  
채무자 보호를 사적자치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③ 우리의 정책대응

우리도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 부메랑은 2003년 카드사태로 나타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련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개인채무 관련 정부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우선,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모집과 계약체결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제정(2002년)하고,  
한 때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부활(2007년)시켰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맞물려서  
LTV·DTI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② 두 번째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2002년)와  
법원 개인회생제도(2004년)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파산(1962년 「파산법」 제정) 이외에 개인채무를 감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개념이었지만,  
도입 이후에는 수차례 과감한 제도개선이 이어졌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가혹한 불법 추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년)하였습니다.

법 제정에 앞서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채권추심(2006년) 뿐만 아니라 채권매각(2017년, 관련입법 없음)에서도  
채무자 보호 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4] 향후 과제

그동안 정부는 개인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당시의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추심압박에 대한 채무자의 호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T/F는 이전의 정책대응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것입니다.

법에서 금지되는 추심행위를 아무리 세세하게 나열하더라도 회수를 해야지만 자기소득이 확보되는 구조 하에서는 언제든지 과잉추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금융회사의 추심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고객보호와 재기는 감안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취하는 방식으로 추심관행을 형성했습니다.

갚지 못할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15년, 25년씩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연체채권 관리의 기본원칙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고객이 한 번 연체하기만 하면, 외부인력까지 동원하여 추심하고 채권매각을 통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습니다.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세계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하여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win-win)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 5 맺음말

생각을 바꾸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 보다 두 배 이상 어렵습니다.

소비자신용규율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은  
3년간 기초논의와 3년간 법제화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습니다.

금번 작업도 검토과제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과제간 상호연관성도 고려해야 하고  
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정책대응으로  
단기 가시적인 성과(low-hanging fruit)를 얻었다면,  
금번 작업은 그 동안 손이 닿지 않았던  
보다 가치있는 성과(high-hanging fruit)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진행될 T/F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기대합니다.  
본 T/F에서 다룰 과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도 미리 논의된다면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